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홍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1
----------	------

발의연월일 : 2022. 9. 22.

발 의 자 : 홍영진, 김태욱, 정재환,
이명녀, 문기호, 박경흠,
김도운, 안영호, 문희성,
강혜순

1. 제정이유

한국자유총연맹의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 및 지원 신청 등(안 제3조~제4조)
- 다. 공유재산의 대부 등(안 제5조)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2. 9. 22.~9. 29.(7일간)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중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전,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중구지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해당 단체의 신청을 전제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및 규모에 따라 필요 예산을 달리함
- 이는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3. 작성자

- 소 속 : 자치행정과
- 직 급 : 지방행정서기
- 이 름 : 박은민
- 연락처 : 290-3254